

(주)엔트리연구원 - 배선기구제조업체협의회 업무협약서

“(주)엔트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배선기구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험인증 업무”에 대한 상호 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연구원과 협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범위)

1. 배선기구제조업체협의회 회원사의 시험·인증 업무(KC 시험·인증, KS 시험·인증, 전자과시험·인증 및 ISO인증 등)와 관련된 범위로 한다.
2. 기타 협의회가 필요로 하는 시험·인증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 (의무)

1. 연구원은 배선기구류 제품의 시험·인증업무를 위해 제반 설비를 2025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협의회 회원사는 시험·인증업무 의뢰 시 연구를 최우선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협의회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회 회원사의 품질향상 및 품질담당자의 시험방법, 관련 규격 이해 등을 위한 품질교육을 지원한다.
4. 연구원은 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연구원의 제반 수행업무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한다. (예 : 시험기간, 수수료, 시험결과 등)
5. 협의회는 연구원과 회원사 간 원활한 시험·인증 업무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 (절차)

1. 협의회 회원사가 해당 배선기구류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 등의 업무를 의뢰할 때에는 규정에 따른 신청서, 시료, 수수료 등을 연구원에 제출한다.
2. 연구원은 협의회 회원사가 시험·인증을 신청한 경우 완료 예정일을 통보한다.
3. 연구원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및 시험범위)

1. 협약에 따른 시험·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인증 범위는 KC 안전인증, 전자파 시험, ISO 인증 및 기타 시험으로 정한다.
3. 수수료 수납은 신청서 접수 시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협약기간)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원과 연구원은 이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은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1월 25일

[주] 엔트리연구원

대표이사 김홍수



배선기구제조업체협의회

회장 김석주

